

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

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(☎ 044-201-3614)

- ▶ 2014년 1월 17일부터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의 요건이 완화됩니다.
- ▶ 그 간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위해서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포함한 높이 이상으로 성토하여야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성토로 인한 공사비 부담 및 주변경관 저해 문제가 있었으나,
 - 하천법을 개정(2013년 7월 16일)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는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(여유고 제외)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- ▶ 이러한 행위제한 요건의 완화로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였던 공사비 부담 및 주변경관 저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하천법

<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>

- ▶ 추진배경 :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홍수위(여유고 포함)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의 공사비 부담 및 주변경관 저해 등 문제점 발생
- ▶ 주요내용
 - ①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(여유고 제외)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
- ▶ 시행일 : 2014.1.17.